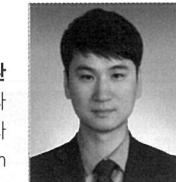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31)

수의사의 입출국신고 의무



한 두 환
법무법인 송파
변호사
lawvet@naver.com

인체약품 전문 제약사인 명의제약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김명의 수의사는 일본으로 1주일간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해외여행은 대학시절부터 친구로서 현재는 모교 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과정인 이학구 수의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임상 수의사, 서울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동기 수의사, 농협중앙회에서 사료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정성 수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 군복무 중인 강후배 수의사와 함께 떠나기로 했다.

김명의 수의사와 친구들이 일본으로 떠날 즈음 일본에서는 마침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일본의 주무부처도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김명의 수의사와 친구들은 출국할 때에 별다른 신고 없이 출국하였고, 1주일 여행 후 무사히 귀국하였다.

귀국길에 공항에서 김명의 수의사와 친구들은 입국심사 중 일본에서 입국하였다고 하였고, 검역관은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시설에서 신체, 의류, 수하물 등을 소독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와 친구들은 소독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검역관의 눈을 피해 소독을 하지 않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김명의 수의사와 친구들은 어떤 제재조치를 받게 될까?

김명의 수의사와 친구들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출국을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② 입국 과정에서 소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자.

축산관련자의 출국신고 의무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축산관련자에게 일반인에게는 없는 특별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서 축산관련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와 의무의 내용, 그리고 위반시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축산관련자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항은 축산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가족, 동물약품 판매업자, 사료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수의사도 포함된다. 우선 여기에서 가축의 소유자에는 개와 같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의해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등의 가축을 키우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리고 수의사의 경우에도 모든 수의사가 축산관련자인 것은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는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수의사가 포함된다.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동물병원 업무를 하는 수의사, ② 수의·축산 업무 담당 공무원 수의사, ③ 공중방역수의사, ④ 수의학과 또는 축산학과 등의 대학 교수 또는 대학원생, 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또는 수의사회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⑥ 동물원 또는 국립생태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해당한다.

이학구 수의사는 ④의 경우에, 박임상 수의사는 ①의 경우, 최동기 수의사는 ⑥의 경우, 정성수 수의사는 ⑤의 경우, 강

후배 수의사는 ③의 경우에 각 해당한다. 특히 정성수 수의사는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사료판매업자에도 해당함을 주의해야 하겠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인체약품 전문 제약사인 명의제약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축산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출국신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나. 김명의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제약사의 직원이었다면?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인체약품 전문 제약사가 아닌 동물용의약품도 생산하는 제약사에 고용된 경우는 어떨까?

[가축전염병예방규칙] 제7조의4 제1항은 동물약품 판매업자에 동물약품제조업자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및 실제 적용례에 의하면 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는 그 소유주뿐만 아니라 고용된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다른 동료 수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축산관련자’에 해당하여 동일한 의무를 진다.

다. 출국신고 의무의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항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맡게 되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국신고하는 내용과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 동법 시행규칙 7조의4 제5항은 검역본부장에게 방역정보시스템, 즉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공항 등에서 출국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신고의 내용은 인적사항과 방문국, 출입국일자 등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을 방문하려는 경우이므로 위의 출국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라. 위반시의 제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2항은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를 제외한 다른 수의사들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의 위반으로 바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겠지만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마. 기타 준수사항

축산관련자는 위의 출국신고 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일정한 준수사항이 요구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을 하지 않을 것과,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자제할 것 등이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역본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입국신고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체류한 내용 등을 기재한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축산관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는 의무사항이지만, 축산관련자는 위반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입국과정에서는 매뉴얼상의 행정절차대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방역조치 협조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검역관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입국자는 이러한 조치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소독 등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역시 축산관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축산관련자는 위반할 경우 벌금을 넘어서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된다.

김명의 수의사를 포함한 위 수의사들은 소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방역조치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김명의 수의사는 축산관련자가 아니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다른 수의사들은 이를 넘어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6월 3일부터 발효

위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6월 3일부터는 해외여행 등의 경우 출국신고를 꼭 챙기는 것이 좋겠다. ♪